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01
----------	-------

발의연월일 : 2025. 10. 1.

발 의 자 : 민홍철 · 문진석 · 정준호
장종태 · 조계원 · 허성무
손명수 · 백혜련 · 한준호
허영 · 이용우 · 김교홍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가정방문이나 지도·관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여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 또는 지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가정방문 또는 지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제3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 또는 지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도·관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 관리) (생 략) <신 설>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 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② <u>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 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 족(보호자를 포함한다)은 정당 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가 정방문 또는 지도·관리를 거 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75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신 설>	제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1의2. <u>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 문 또는 지도·관리를 거부 하거나 방해한 자</u>
1의2. ~ 1의5. (생 략) 2. ~ 4. (생 략) ④ (생 략)	1의3. ~ 1의6. (현행 제1호의2 부터 제1호의5까지와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